#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7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 박성중·강기윤·홍문표

엄태영 · 백종헌 · 김기현

홍석준 · 송석준 · 김 웅

이명수 · 황보승희 · 박덕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0년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혼인율과 출산률을 감소시키는 주 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 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취득세 경감율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를 "100분의 60을 경감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	①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	
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	
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	
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u>100분의</u>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u>60을 경감한다.</u>
<u> 감한다</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